

인권법 제정 및 국가인권기구 설치 민간단체공동추진위원회 관련자료

1. 결성식 자료집, 1998.9.17
2. 공추위활동 주요경과
3. 대통령께 보내는 건의문 및 성명서 모음
4. 공추위 확대·개편 자료집, 1999.4.29

<자료 4> 공대위 활동 주요 경과

● 국가인권기구 설치 주요 경과

93년 6월	비엔나 유엔세계인권대회에 참여한 한국 민간단체공대위 - 정부에 인권법 제정과 국가인권기구 설치를 요청
97년 11월	김대중 대통령 대선공약 발표 - 인권법 제정 및 '국민인권위원회' 설립
98년 3월	새정부 100대 과제 발표 - 인권법 제정 및 '국민인권위원회' 설립 공표
5월	국제앰네스티 - "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 설립에 관한 권고안" 채택 및 발표 (이후 국제앰네스티는 현재까지 여러 차례 고개서한, 성명서 등을 발표하면서 줄곧 독립적이며 실효성 있는 국가인권기구 설치를 촉구해왔음)
5월 21일	NCC 인권위, "과거청산 과제와 국가인권기구의 방향" 토론회 개최
6월 23일	"한국의 국가인권기구, 어떻게 만들어야 하나", 국제앰네스티 국가인권기구 전문가 멜 제임스 변호사 초청 공개토론회 개최
9월 7일~9일	자카르타에서 열린 아태지역 국가인권기구 포럼에 민간단체대표단 파견
9월 17일	30여개 민간단체가 참여한 '인권법 제정 및 국가인권기구 설치 민간단체 공동추진위원회'(이하 공추위) 결성
9월 18일	공추위 대표단(최영도/지은희/신혜수/김동완/곽노현), 박상천 법무부 장관 면담 - 투명하고 민주적 입법과정 거칠 것을 요구
9월 25일	법무부 '인권법' 시안 발표/ 공추위, 대한변협 등 법무부안에 대한 비판성명서 발표 - 국가기구로 인권위원회를 설립하고 민주적 입법과정 보장할 것을 촉구/ 민주법연 월례토론회 "인권법 제정과 국가인권기구 설치의 바람직한 방향" 개최
9월 28일	성공회대인권평화연구소 "국민정부의 인권문제와 인권정책의 방향과 과제" 토론회 개최
10월 1일	공추위 "인권법 시안 비판과 향후 공추위 전략 마련을 위한 내부 토론회" 개최/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인권법 및 국가인권기구에 관한 토론회" 전북지역에서 개최
10월 14일	인권법 관련 제1차 당정협약 - 법무부의 '법인안'과 국민회의의 '국가기구안' 사이의 입장 차이로 결렬
10월 16일	법무부, '인권법 공청회' 개최 - 공추위측 토론자로 곽노현·조용환 참가
10월 17일	KBS 인권법 관련 심야토론 - 공추위측 토론자로 곽노현·김성재 참가
10월 19일	브라이언 버드킨(Brian Burdekin, 유엔인권고등판무관 특별자문관, 국가인권기구 유엔전문가)과의 간담회 개최 - 버드킨, 법무부 시안이 인권위원회의 독립성 보장하기 힘들 것이라는 입장 표명
10월 23일	국제앰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 김대중대통령과 법무부장관에게 제1차 공개서한 송부 - '법무부안'이 독립성과 실효성을 결여하고 있다고 지적
10월 26일	공추위, 내부토론회 거쳐 공추위 법안 최종 확정

98년	10월 29일	김대중 대통령, 시민사회단체 대표 초청 간담회 개최 - "인권법다운 인권법 만들 것"이라고 약속
	11월 5일	김대중 대통령, "유엔권고안에 따라 인권법안 만들라"고 지시
	11월 6일	공추위 '인권위원회법'(안) 공청회 개최
	11월 7일	공추위 대표단(곽노현/ 신혜수/ 차지훈), 법무부장관 초청 간담회 참가하여 법무부안의 치명적 문제점 지적
	11월 10일	법무부 국정감사 - 이규택(한나라당)/ 조찬형·조순형·이기문(국민회의) 등 여야의원 모 두 법무부 시안의 문제점 지적
	11월 27일	법무부·국민회의 제2차 당정협의 - 법무부 1차 수정안 발표(이사회제도 폐지, 임시구제 조치권고권 부여 등 일부분 개선, 여전히 특수법인 형태 고수)/ 공추위와 국제엠네스티, 연이어 법무부 수정안 역시 인권위의 독립성을 보장할 수 없다며 비판 성명 발표
	11월 24일 ~27일	공추위 대표단 정치권 로비 진행 - 이부영(당시 한나라당 부총재)/ 천장배(국민회의 총 재권한대행 비서실장)/ 주미애(국민회의 제1정책조정부위원장)/ 장영달(국민회의 원내수 석부총무)/ 남궁진(국민회의 제1정책위원장)/ 김근태(국민회의 부총재)/ 김원길(국민회의 정책위의장)/ 목요상(한나라당, 국회법사위원장)/ 황우여(한나라당, 국회인권포럼대표) 이상 9인 개별 면담하고 호의적 반응 얻어냄. 하지만 국민회의 법사위원, 각당 총재, 자 민련 의원과의 면담이 이루어지지 못함.
	11월 28일	인권법 관련 제2차 당정협의 - 법무부의 법안안과 국민회의 국가기구안 대립, 또다시 결렬
	11월 30일	공추위, 긴급 성명서 발표 - 법무부 수정안 비판
	12월 3일	제257회 목요일집회 - "국민을 위한 국가인권기구인가, 법무부를 위한 국가인권기구인가" 개최/ 전국시민단체대회 "독립적 국가인권위원회" 설치 촉구하는 공동성명 채택
	12월 4일	국제엠네스티, 김대중 대통령에게 제2차 공개서한 송부 - 법무부 수정안에 대해 비판
	12월 5일	공추위 명동성당 앞 기자회견 및 대국민 캠페인 전개
	12월 8일	강만길·고은·김관석·김성수·김찬국·박형규·서영훈·유현석·이동명·이세중·이효 재·한완상 등 민주화운동원로 12인, '독립적 국가인권위원회 설치'를 당부하는 대통령 건 의문 발표/ 국회인권포럼, "인권위원회법의 제정방향에 대한 정책심포지움" 개최
	12월 9일	김대중 대통령, 청와대에서 국민회의·자민련 정책위의장, 법무부장관을 참석시킨 가운데 당정협의 주제 - 당정간 입장차이로 조율 실패, 자민련은 법무부안에 동조/ "민간단체 의 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국민회의와 자민련 양당 단일안 마련하고 당정협의 거칠 것" 지 시
	12월 11일	국민회의·자민련 정책위와 공추위 대표단 면담
	12월 31일	국민회의 김원길 정책위의장, 공추위 대표단 초청 간담회 개최 - 2월까지 인권법 제정 마 무리짓기로 약속/ 국가기구로 인권을 설치한다는 당론 재확인
99년	1월 26일	박주선 청와대 법무비서관, 국가인권기구와 법무부 인권법안에 대한 유엔전문가들의 의견 을 청취한다며 뉴욕출장/ 추후 유엔전문가의 의견을 의도적으로 왜곡해 법무부안을 지지 하는 보고서를 작성했음이 드러남/ 공추위, 박주선 비서관의 해임 촉구 논평 발표
	2월 9일	인권법 관련 제3차 당정협의 개최 - 법무부 제2차 수정안 제시/ 당정간 입장차이로 또다 시 결렬/ 공추위, 국제엠네스티가 연이어 법무부 2차 수정안 비판

99년	2월 19일	공추위 국민회의 당사앞 축구 집회 개최 - 독립적 국가인권위 설치 촉구/ 독립적이고 실효성있는 국가인권위 설치를 촉구하는 대통령건의문 송부
	2월 22일	국제앰네스티, 김대중 1년 집권 평가 성명 - 독립적 국가인권위 설치 촉구
	2월 24일	김대중대통령 취임1주년 기자회견 - "법무부안 채택않고 정부로부터 자유로운 민간기구로 인권위 설치하겠다"는 입장 발표
	3월 2일	공추위 대표단, 이기문 인권위원장 면담하며 인권위 설치논의의 공론화 요구
	3월 10일	김원길 국민회의 정책위의장, 공추위 대표단에게 "인권위 설치논의 공론화하고 민간단체와 협의해나가겠다"고 약속
	3월 15일	김원길 정책위의장 경질/ 이후 장영철 신임 정책위의장 취임
	3월 22일	당정협의 개최 - 법무부 제3차 수정안 제시/ 법무부와 국민회의, 제3차 수정안을 일부 수정한 채 당정협의안 기습 타결
	3월 23일	공추위, "민간단체와의 약속 저버리고 인권법안을 말실 날치기 처리"한 국민회의 비판, 인권위 독립성·권한 미흡 지적/ 정책위의장실 항의방문
	3월 25일	법무부장관, 대통령에게 업무보 보고/ 대통령, 법안중 법무부장관 개입부분 수정·"민간단체 대표들과 장관이 직접 만나 의견을 조율하라"고 지시
	3월 26일	공추위, "날치기 당정협의 규탄집회" 개최/ 공추위 대표단 정책위의장 면담
	3월 29일	유기협, "인권법 기만이다. 의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하라"며 식발식 단행
	3월 30일	공추위, "인권위 독립성·권한 강화요구 및 국무회의 상정 저지 집회" 개최
	3월 30일	인권법안 국무회의 통과
	3월 31일	민주화운동원로 30여명, "인권법안 철회" 촉구 기자회견
	4월 7일	인권활동가 30여명, "정부 인권법안 철회와 인권법 재논의"를 촉구하며 일주일간 연합단식농성 돌입
	4월 8일	법무부, "정부의 인권법(안)에 대한 공추위의 성명, 과연 옳은가"라는 제목의 홍보자료를 통해 "민간단체의 주장은 도저히 용납될 수 없다"며 비난
	4월 9일	국제앰네스티, 국제고문방지기구(World Organization Against Torture), 로버트 케네디추모인권센터(Robert F. Kennedy Memorial Center for Human Rights) 등 12개 국제인권단체, "인권법 제정과정의 투명성과 민간단체와의 충분한 협의"를 촉구하는 성명 발표
	4월 12일	대한변협, "인권법 이대로 좋은가" 공청회 개최/ 참석자들, 정부법안의 문제점 지적.
	4월 12일	유엔인권위 참가 민간단체대표단, 제네바에서 브라이언 버드킨과 메리 로빈슨 유엔인권고등판무관 면담, "한국의 인권법 제정과정의 투명성을 결여하고 있으며 인권위가 약체 기구화될 우려가 있다"는 입장 표명
	4월 16일	공추위, "인권법안 국회 상정 저지" 결의대회 개최

99년 4월 19일	공추위 대표자회의, 공추위 확대·개편하고 운동의 대중화 지향하기로 결의
4월 19일	대한변협과 공추위, 국회 법사위에 인권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4월 22일	인권법안 국회 법사위 상정/ 여야의원 대부분이 정부안의 문제점 지적, 법사위 제1소위 심의에 회부하기로 결정(*제1소위 구성의원 : 최연희(위원장), 박헌기, 정형근, 조찬형, 함석재)
4월 22일	공추위, 인권법안 국회통과 지지 결의대회 개최
4월 29일	공추위 확대·개편대회 개최 ⇒ "올바른 국가인권기구 실현을 위한 민간단체 공동대책 위원회"로 개명/ 70여개 민간단체 참여하는 범국민적 기구로 거듭나
5월 8일	국제법학회, "인권위원회 제도의 법적 검토"라는 주제로 학술세미나 개최
5월 17일	공대위 '국가인권위원회설치법' 초안 마련
6월 1일	전국군폭력희생자유가족협의회(전군협), 국방부 앞 단식농성 전개, '군의문사 진상규명을 위한 독립적 국가인권기구 설치' 촉구
6월 4일	군의문사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대표 기자회견 개최, 독립적 국가인권기구 설치 촉구
6월 16일	공대위 내부 검토 거쳐 '국가인권위원회설치법'안 최종 확정
7월 13일	공대위 대표단, 청와대 민정수석 면담, 민정수석, "국가기구로 인권위 설치하기로 최대한 노력하고 법무부안 폐기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혀
7월 19일	국민회의 신임 정책위의장 임채정 의원, 공대위 대표단 초청해 인권법안에 대한 공대위의 입장 확인, 민간단체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약속
8월 26일	인권법안에 관한 국회 공청회 개최
9월 21일	국민회의 이상수·유선호 의원과 공대위 대표단 면담, 국민회의 1차 수정법안 제출 - 법안 형태로 조사범위와 권한을 대폭 강화한 법안 제출
10월 1일	국민회의 이상수·유선호 의원과 공대위 대표단과의 2차 면담, 법무부와의 당정협의 내용 설명하며, 2차 수정법안 제출/ 법안 강행처리할 뜻 내비쳐
10월 11일	서울 NGO대회 개막, 공대위 소속단체들 '독립적이고 실효성있는 국가인권기구 설치' 촉구하며 피켓시위, 청와대 경호대원들의 폭력행사로 다수의 활동가들이 부상
10월 13일	메리 로빈슨 유엔인권고등판무관과 공대위 대표단 면담, 로빈슨, 독립적 국가인권기구 설치와 국보법의 단계적 폐지를 권고하는 내용을 대통령에게 전달할 것이라고 밝혀
10월 25일	국민회의 3차 수정법안 발표
11월 9일	국민회의 이상수·유선호 의원과 공대위 대표단과의 3차 면담, 법무부와 당정협의 거쳐 최종 수정안 제출, 법안 강행처리 방침 확고하게 드러내
11월 19일	공대위, '국가인권위원회법', '통합방송법', '의문사진상규명특별법' 등 민주개혁법안의 조속한 제정과 '국가보안법'등 반민주악법의 철폐를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공동기자회견 가져

99년	11월 26일	국민회의와 법무부의 당정협의 거친 인권법 수정안이 국회 법사위 소위에 비공식적으로 제출됨에 따라 공대위의 긴급 성명서와 원로건의문이 발표됨. 공대위, '기만적 특수법인안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서 발표. 이돈명·리영희 등 민주화운동 원로 20분, 공대위의 입장을 지지하면서 김대통령의 소신있는 결단을 촉구하는 대통령건의문 발표.
	11월 27일	'반민주악법 철폐 및 민주개혁법안 쟁취 제1차 범국민연대행동' 개최. 공대위, '법무부에 의한, 대통령을 위한, 정권의 인권법'을 철회하고 인권위를 독립적 국가기구로 설치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정을 촉구하며 공동행동에 나서
	11월말~	국회법사위, 수정된 인권법안에 대한 심사 진행
	12월 4일	김대중 대통령, 공동여당 총무단과 정책위 간부들과 함께 한 자리에서 '인권법안'의 조속한 처리 지시
	12월 5일~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중심으로 인권위원장을 정무직 공무원으로 임명하면서 예산을 독립시킬 수 있는 방안 모색
	12월 20일	국민회의 임채정 정책위의장, "인권단체의 환영을 받지 못하는 상태에서 인권법 제정을 추진할 수 없다"며 인권법 제정 연기 선언. 법무부의 저항으로 국가기구화 추진 끝내 무산됨
2000년	1월 3일	김대중 대통령, 신년사를 통해 "인권법"의 지속적인 추진 의사 밝힘
	1월 18일	공대위, '총선시민연대' 측에 총선출마 부적격자로 박상천 전 법무부장관과 장영철 국민회의 정책위의장 추천/ 추후 총선시민연대, 부적격자 명단에 박상천 의원 포함시킴
	1월 25일	공대위, 청와대의 '인권정책자문기구' 설치 제안건 검토를 위한 토론 개최

민주화운동 원로선생님들께

먼저 인권법안에 대한 지난 3월 31일자 성명서에 흔쾌히 참여해 주신 원로선생님들 한분 한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모처럼 많은 원로분들께서 함께 해주신 귀한 성명서가 사장되는 것이 안타까와 비용부담을 무릅쓰고 성명서 전문을 한겨레신문에 광고형식으로 게재하였습니다. 일일이 사전양해를 구하지 못하고 일을 진행한 점을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다시피 기자회견 당일 이돈명변호사님, 박형규목사님, 박용길장로님, 리영희선생님 모두 네 분을 대통령 면담대표로 선임하고 다양한 경로로 청와대에 면담요청을 하였습니다만 아직까지 청와대로부터 아무런 소식이 없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원로성명서에 정부, 여당이 화들짝 놀란 것은 틀림없는 듯합니다. 한 예로 요즘 법무부 관계자들이 원로선생님들께 일일이 전화하여 설득과 홍보를 병행하고 있으며, '정부의 인권법(안)에 대한 공추위의 성명, 과연 옳은가?'라는 제하의 법무부 홍보자료를 배포하였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법무부도 나름의 논리가 있겠지만 인권단체 활동가 34명이 아름다운 봄날의 유혹을 뒤로 하고 지난 수요일부터 명동성당에서 1주일 단식농성에 돌입한 이유는 인권법안의 내용도 내용이지만 절차와 과정에서 우리 민주화운동과 인권운동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마저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반세기만의 정권교체와 인권법 논의의 배경에는 원로선생님들께서 희생과 고통을 마다 않으시며 주도해온 자랑스런 인권투쟁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난 1년간의 입법논의 기간중 법무부와 국민회의가 원로선생님들께 충분하고 의미있는 방식으로 자신들의 견해를 설명하고 의견을 구한 적이 단 한번이라도 있었는지 의문입니다. 민가협, 유가협등 인권피해자 단체나 재소자, 시설수용자, 장애인, 여성노동자, 외국인노동자등 인권취약 집단에 대해서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법무부는 지난해 9월 25일 인권법 시안을 발표한 이래 단 한번의 공청회를 개최했을 뿐 어떠한 추가 공청회도 설명회도 토론회 자리도 따로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공추위는 이런 일방적 절차와 과정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민주적 절차와 과정이 없이 정권 차원에서 졸속으로 짜집기된 인권법안이기에 내용적으로도 결함이 많고 한계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법무부 주도로 진행될 향후의 입법 및 설립 과정을 거치면서 그나마의 내용마저 실질적으로는 더욱 약화될 것이 분명합니다. 지금과 같은 역학관계가 지속되는 이상 새로 탄생할 인권위원회는 '준법서약서판 인권위원회' 이상이 되지 못할 전망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공추위는 정권의 관점에서 입안되어 일방적 시혜인양 던져지는

인권법안을 단순히 없는 것보다 낫다는 소극적인 이유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수수방관할 것인지, 아니면 과감한 투쟁을 통해 하고 있을 것이냐, 아니면 결단코 정권의 관점에서 권력간 논의에 의해 일방적 시혜로 던져지는 인권법안을 수용해서는 안될 것으로 믿습니다.

국제앰네스티와 국제고문방지기구 등 12개 국제인권단체들도 저희의 이러한 주장에 깊이 공감하며 독립적 인권기구 설치와 시민사회와의 협의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들은 아시아에서 모범이 될 만한 인권기구를 설치할 것이라 기대를 모았던 김대중 대통령에게 적잖이 실망하고 있는 눈치입니다.

법무부가 원로 여러분께 보냈다는 홍보자료를 받아보았습니다. 점잖은 글입니다만 적잖은 오류와 과장이 있습니다. 더구나 원로선생님들께서 주도하신 31일의 성명서 내용이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주장”이라는 무례함까지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함께 보내드리는 자료는 법무부의 왜곡된 억지논리에 대한 공추위의 의견을 정리한 글입니다. 저희는 결코 민간단체의 주장만이 옳다고 주장하지는 않습니다. 국제인권기준과 한국의 현실에 비추어 볼 때 바람직한 상을 제시하고, 법무부의 어이없는 주장을 논박하고 있을 뿐입니다. 하여 오랜 세월 권력기관에 의해 짓눌려온 국민들의 한과 눈물을 씻어줄 수 있는 인권기구가 설치될 것을 기대할 뿐입니다. 설령 저희들의 주장에 오류가 있다고 할지라도 이는 법무부가 뒤에서 홍보자료를 만들어 공추위를 비난할 것이 아니라 공개된 논의의 장을 만들어 함께 검토하면서 새로운 인권법과 인권기구의 상을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생산적인 논의를 전개해야 옳다고 믿습니다.

함께 보내드리는 자료 역시 부족한 점이 많은 글이기는 합니다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권활동가들은 오늘로 단식농성은 일단 정리하고 새롭게 국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인권법 대응방안을 모색하려 합니다. 새로운 인권의 시대를 열 수 있는 인권법 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로선생님들께서도 지지와 비판을 아끼지 마셨으면 합니다. 소중한 말씀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기온 차이가 매우 큽니다. 아무쪼록 건강에 유념하시고 가내 평안하시기 기원합니다.

1999년 4월 13일

인권법 제정 및 국가인권기구 설치 민간단체공동추진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 박노현 올림

법무부의 반박자료에 대한 공추위의 의견

1999년 4월 14일

인권법제정 및 국가인권기구설치 민간단체공동추진위원회

지난 3월 31일 인권법 최종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데 대한 민주화운동 원로들과 인권단체 대표들의 성명에 대해 법무부는 지난 4월 8일 반박하는 자료를 배포하였다. 법무부 자료는 정부안을 주도해 왔던 법무부가 얼마나 인권과 인권위원회에 대해 천박한 인식을 갖고 있는가를 그대로 드러내 주고 있으며, 교묘한 논리의 왜곡으로 문제의 본질을 덮으려는 기만적인 형태를 보이고 있다.

1. 인권위원회는 법무부의 업무보조기관이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우리는 인권위가 결코 법무부의 보조기관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하여 법무부는 국민의 인권보호는 국가의 임무이고, 법무부는 인권옹호의 주무부처인데 인권위가 국가와 법무부를 제치고 인권업무를 독점하면 국가나 법무부는 뒷짐만 지고 있으라는 것이냐고 반문한다.

참으로 한심한 소리이다. 지금 논의되고 있는 인권기구는 민간차원에서가 아니라 국가차원에서 국가의 인권보장의무를 보다 실질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만드는 것이다. 즉, 인권위원회는 '국가'의 인권보장의무를 수행하는 기구인 것이다. 유엔을 비롯 인권기구가 설치된 어느 나라도 인권기구가 국가의 인권보장의무와는 별개의 기구라고 주장하지는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부가 인권위를 국가의 임무수행을 보조하는 기구에 불과하고 강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는 법무부가 인권위를 국가기구의 틀 밖으로 끌어내고 정부조직법상 법무부가 인권옹호업무의 주무부처임을 근거로 내세워 인권위의 설립과 그 운영에 관여하겠다는 의도 때문이다. 더구나 일개 행정부처에 불과하고 또 인권침해행위가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수사기관과 교정기관을 통솔하고 있는 법무부가 국가의 인권보장 업무를 책임지는 부처로 자임하고 있는 것은 극히 우려스러운 일이다.

인권위는 기본적으로 국가기관의 인권침해행위를 감시, 견제하여야 하므로 국가기관으로부터의 독립성이 필수적이다. 특히 인권위가 법무부로부터 독립적이어야 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인권위가 법무부의 보조기구에 불과한 법인으로 설립될 경우 주무부처인 법무부로부터 결코 독립적일 수 없다. 더구나 법무부가 인권위의 주무부처임을 자임하고 '인권'을 통해 자신의 위상을 비정상적으로 높이려는 야욕을 드러내고 있는 현실을 볼 때 더욱 그러하다.

방송개혁에 관한 방송개혁위원회의 활동을 보라. 방송업무에 대한 주무부처는 문화관광부이다. 그러나 방송위원회의 설립과 방송법 제정과정을 주도하는 것은 문화관광부가 아니라 대통령자문기구인 방송개혁위원회이다. 방송개혁을 위한 법안인 '방송법'도 문화관광부가 아닌 방송개혁위원회가 골격을 논의하여 여당의 의원입법형태로 추진되고 있다. 언론또한 국가기관으로부터의 독립성이 관건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권법의 경우는 법무부가 법안을

만들고, 설립을 주도하고, 운영에도 관여하려 하고 있다. 이를 두고 법무부가 인권업무는 법무부가 주무부처이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주장한다면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에 다름아니다.

2. 법무부장관이 설립과정을 주도하여도 독립성이 훼손되지 아니하며, 현실적으로 법무부가 이를 주도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인권위 설립과정을 결코 법무부가 주도해서는 안된다는 우리의 주장에 대해 법무부는 인권 주무부서인 법무부가 설립과정을 주도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며, 독립성 보장에도 문제가 없다고 장변한다.

정부안에 의하면 설립위원을 법무부장관이 추천하고, 법무부장관이 설립정관 인가권을 갖으며, 위원회 조직 및 운영의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할 대통령령을 초안하게 되어 있는 등 법무부장관이 인권위 설립을 주도하게 되어 있다. 설립위원과 설립정관은 인권위의 뼈대를 구축하는 일을 담당하는데, 이를 법무부에 위임한다면 법무부의 이해관계가 필히 관철될 수밖에 없다.

왜 설립과정을 반드시 법무부가 주도해야 하는가. 법무부장관이 아닌 대통령이 인권단체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설립위원을 위촉할 수도 있는 것이다. 설립정관에 들어갈 사항도 사실상 모두 법률이나 위원회의 자체 규칙에 포함시킬 수 있으므로 필요없다. 지방자치단체인 시·도 등 역시 법인이면서도 정관을 두지 않고 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시행령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유엔에서는 자체 규칙제정권을 중요한 요소로서 권고하고 있고, 정부안에서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법률에서 어떠한 사항을 위임함에 있어 이를 시행령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부령, 즉 규칙으로 할 것인지는 법기술적인 문제이므로 반드시 시행령을 두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결국 법무부장관의 관여를 배제하고 인권위의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방식으로도 얼마든지 설립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왜 독립성 훼손의 비난을 들어가면서까지 법무부가 설립과정을 주도하려 하는 것인가.

법무부는 외국의 경우 법무부장관이 인권위에 더욱 깊게 관여하고 있다며 자신의 관여를 정당화하고 있다. 그 근거로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의 인권위원의 추천권을 '법무부장관'이 갖고 있음을 제시한다. 그러나 이들 국가의 정치, 사회적 민주화 수준과 우리의 경우를 평면 비교할 수는 없다. 더구나 이들 나라의 법무부는 검찰과 제도적으로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결코 우리의 법무부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3. 조사대상의 제한이 당연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정부안처럼 인권위원회의 관할범위에는 거의 모든 인권사항을 포함시키면서 그 조사대상으로는 몇 가지 인권침해유형으로 한정하여 관할범위와 조사대상을 위중화시키는 것은 유엔의 권고에도 반하고, 외국의 사례에 비추어서도 극히 이해적인 입법형태이다. 법무부가 조사대상 제한의 예로 들고 있는 뉴질랜드와 캐나다는 인권위의 관할범위자체가 차별행위만을 다루도

록 되어 있는 것이지 조사대상을 따로 제한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호주의 경우 차별행위이외에 시민적·정치적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규정된 인권도 관할에 포함시키고 있으므로 법무부 안과 같이 8개의 인권침해유형만으로 제한하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차원이 다르다. 이들 국가들이 인권위의 관할범위를 주로 차별행위로 국한하고 있는 것은 이들 국가에서 중요한 인권문재인 차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민주화가 덜 진전된 국가에서의 인권문제는 차별문제이외에 시민적·정치적 권리와 관련된 인권문제보장이 시급한 실정이다. 인도, 남아공 등이 헌법 또는 국제인권규약에 규정된 인권을 모두 관할범위에 넣고 조사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인권위원회는 사실상 그 나라의 민주화 정도, 인권보장의 정도와 맞는 수준에서 역할이 부여된다. 우리와 같이 민주화의 이행기에 있는 국가에서는 남아공의 경우처럼 그동안 국가권력에 의하여 억눌리고 짓밟혀왔던 인권이라는 화두를 전사회적으로 제기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최중안처럼 인권위의 조사대상을 주로 수사기관의 생명·신체의 자유침해행위만으로 국한하는 것은 이와같은 인권위가 현 시기에 가져야 하는 사명과는 맞지 않는 것이다.

법무부는 또 인권침해행위 유형 8가지 중 인권법안 제40조제1호‘아’목 “사람으로 하여금의 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행위”가 포괄규정이기 때문에 이로써 수사기관이나 교정시설에서 일어 날 수 있는 모든 인권침해행위를 조사할 수 있다고 한다. 법무부가 인권침해행위 유형 8가지를 규정할 때 이를 형법전의 범죄행위유형을 옮겨 온 것은 틀림없다. 법무부가 포괄규정이라고 주장하는 위 ‘아’목도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죄, 형법 제324조 강요죄를 옮겨 온 것이다. 그런데 법무부의 주장처럼 위 규정이 모든 인권침해행위를 포괄할 수 있는 것이라면 다른 유형의 인권침해행위를 따로 규정하는 것은 무의미하며, 또한 형법전에서도 마찬가지로 다른 범죄행위규정 역시 모두 무의미한 것이 된다. 아무리 위 규정을 확대하여 해석한다 하더라도 위 규정으로 모든 인권침해행위를 포괄할 수는 없는 것이다. 만일 법무부가 모든 수사기관등의 인권침해행위를 인권위의 조사대상으로 하고자 한다면 논란의 여지가 많은 방식으로 규정할 것이 아니라 “인권위는 수사기관등의 모든 인권침해행위를 조사할 수 있다”라고 하면 명쾌해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부가 인권위가 조사할 수 있는 대상을 8가지로 한정하여 유형화시켜 두고 이로써 마치 모든 인권침해행위를 조사할 수 있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알팍한 기만술책에 다름아니다.

4. 피조사기관에 조사거부권을 부여하여도 남용우려가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인권위가 인권보장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조사의 한계를 둘 때 필요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그러나 정부안대로라면 인권위의 조사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진다.

국가기관에 의한 인권침해행위가 발생하였을 때 “국가기관의 기능수행”과 관련이 없다거나 “국익” 또는 “수사·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거나 “사건관계인의 사생활”과 관련되지 않는 것은 거의 없을 것이다. 이와같은 추상적인 기준으로 그야말로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한 조사거부사유를 규정하여 두고 더구나 그에 대한 판단권을 피조사기관의 장에게 부여하고 있

다는 것은 인권위의 조사를 무력화시키겠다는 것에 다름아니다. 예컨대 국가정보원(옛 안기부)에 불법적으로 끌려가 가혹행위를 당하였다는 진정이 인권위에 접수되어 인권위가 이와 관련된 수사서류 제출을 요구하거나 현장시찰을 요구하는 경우 국가정보원장이 “수사방법상의 기밀이 누설되거나 국익에 해가 될 수 있으므로 불가하다”는 확인서 한 장만 써 보내면 그것으로 더 이상의 조사는 불가능해진다. 법무부는 이 때 서면으로 조회를 하면 된다고 주장하지만, 서면조회를 통해 수사자료 입수나 현지시찰을 통해 얻고자하는 목적을 달성하기는 대단히 어렵고, 상대방이 조회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제재할 방안도 없기 때문에(이 경우에는 과태료조차 부과할 수 없다) 성실한 조회응답을 기대할 수도 없는 것이다.

법무부가 최종안에서 인권위에 수사기관의 인권침해행위 조사라는 매우 어려운 업무를 떠넘기고 있음에도, 그리고 인권위가 그와 같은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사명의 전부인 것처럼 주장하면서도 정작 이를 조사할 수 있는 조사권을 제한하는 것은 애초에 제대로된 조사를 바라지 않고 있다고밖에 판단할 수 없다.

5. 시정명령권 부여는 법·제도적으로 어렵다는 주장에 대하여

법무부는 인권위에 시정명령권을 부여하면 인권위가 다른 기관을 재판하고, 헌법재판소를 능가하는 초법적인 기구가 된다고 주장한다. 이는 논리의 비약이다. 행정관청이 어떠한 잘못된 조치를 하는 경우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그 조치의 당부를 심판한다. 그리고 공정거래분야나 노동분야, 언론분야 등과 같이 현대사회에서 전문화되는 분야에 대하여서는 법원의 재판에 앞서 해당 분야의 전문가 그룹이 이를 사전에 한 번 거를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보통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노동위원회, 방송위원회의 심판기능부여가 그 한 예이다. 그러나 행정심판위원회나 이들 각 분야의 전문위원회가 내리는 판정이 최종적인 것은 아니다. 이들의 판단은 이의가 있는 경우 최종적으로 법원 그리고 나아가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거쳐 확정된다.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그리고 이들 전문위원회에서 이른 바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하여 이들 기구가 법원이나 헌법재판소를 능가하는 초법적 기구가 아님은 물론이다.

법무부도 인정하듯이 캐나다나 뉴질랜드의 경우 인권위가 인권침해행위를 조사한 후 당사자사이에 합의가 안되거나 조정이 성립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일종의 인권심판소에 회부하여 구속력있는 결정을 내리도록 하고 있다. 유엔 또한 가능하면 인권위가 심판기능을 행사하는 경우 구속력있는 결정권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고 있다.

결국 인권위에 시정권고권만을 부여하느냐 아니면 시정명령과 같은 구속력있는 권한을 부여하느냐 하는 것은 인권위가 우리 사회에서 맡고 있는 역할과 관련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정책적 문제이지 법무부의 주장과 같이 인권위에 시정명령권을 부여하는 것이 법·제도적으로 모순되는 초법적인 발상은 전혀 아닌 것이다.

오히려 누차 강조하는 것과 같이 정부최종안에 따를 때 인권위 권고가 당사자사이의 합의 실패, 조정실패 후에 또다시 권고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제도적으로 어떠한 의미를 갖는 것인지가 의심스럽고, 고충처리위원회의 경험에서도 보듯이 분쟁의 종결없이 민원인의 한만 더 맏히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십상인 것이다.

6. 맺음 말

우리는 인권위설립을 둘러싼 오늘의 사태가 현정부가 인권위원회설립을 법무부에 맡김으로써 비롯되었다고 본다. 법무부가 인권법을 만들고 논의를 주도하는 것이 법무부장관의 과욕에서 비롯된 것이든 정부의 안이한 인권의식에 의한 것이든 이 시기에 인권문제를 해결하고자 설립되는 인권위원회는 그 동안 인권침해의 주범으로 슬한 비난을 받아 왔던 수사기관의 사령탑인 법무부의 간섭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했다.

법무부는 그 동안 수많은 기회를 통하여 민간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였다고 하지만 법무부가 최초 법안을 발표하기까지 법무부안은 대통령자문위원회에게조차 비밀에 부쳐질 정도로 밀실에서 제정되었고, 법안발표 이후의 과정은 합리적 설득과 다수의 의사반영이라는 민주적이고 생산적인 토론과는 거리가 먼 법무부의 논리치키기, 그리고 다수 인권단체의 의사 외면으로 일관됐다. 그리고 인권위에 대한 법무부의 개입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하고 인권위가 실효성없는 약체기구에 불과한데도, 이를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마치 이로써 인권단체의 의견이 상당히 반영된 것인양 선전하고 있다. 더구나 법무부가 수차례의 토론회에 참석하는 등 민간단체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법무부가 개최한 공청회는 단 한차례뿐이었고 대개가 우리 민간단체들이 주최한 자리에 토론자로 참석, 15분정도 법안내용을 발표하고 자신들의 주장만 되풀이했을 뿐이었다.

우리는 법무부가 논리의 왜곡과 강변으로 일관하는 것을 심분 이해할 수 있다. 법무부가 자신의 수족을 자르는 칼을 만들리 만무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결코 법무부의 이해관계에 휘둘러 인권위가 뒤틀리고 유명무실한 기관으로 전락하도록 방치할 수는 없다. 이는 수십년동안 권력의 폭압 속에서도 우리 스스로의 자존과 인권을 지키고자 하였던 국민 모두의 의무이기도 하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우리의 인권문제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지고 이와같이 법무부의 이기에 왜곡되고 뒤틀린 인권법안을 철회하고, 방송개혁위원회나 태국의 예에서 보듯 인권위원회의 설립과정에 민간인권단체의 실질적인 참여가 보장될 수 있는 기구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덧붙여 우리 민간단체들은 결코 우리의 주장만이 옳다고 강변하지는 않는다. 다만 법무부의 왜곡되고 무리한 주장을 염려하고 있을 뿐이며, 공개적인 논의의 장에서 올바른 인권위의 상을 함께 만들어 나갈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에 설치될 인권위가 아시아 지역의 모범적 모델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억지와 궤변으로 일관된 논쟁이 아닌 생산적인 논의가 가능할 수 있도록 인권법 논의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 것이다.

인권법 제정 및 국가인권기구 설치 민간단체 공동추진위원회

◆주소: 서울 중로구 명륜2가 8-29 ◆전화:02-741-5363 ◆팩스:741-5364 ◆통신:하(천)rights
◆홈페이지 <http://www.jinbo.net/~freedom/hurights> ◆통신방: 참세상 go hurights

수신 : 각 사회단체

날짜 : 4월 12일

인권법안 철회 단식농성 6일째!!! 인권법 공청회 참가 요청

지금 명동성당에서는 인권법안 철회를 촉구하는 인권활동가들의 단식농성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인권법 제정은 김대중 대통령의 대표적인 인권정책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나 법무부 주도로 밀실에서 논의가 지속되면서 많은 국민들이, 특히 사회단체들이 관심을 갖고 논의에 참석할 수 없는 상황이 전개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인권활동가들의 단식농성으로 인권법 논의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좀더 많은 국민들과 사회단체들이 인권법 문제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정부측에서도 인권법 문제를 새롭게 접근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대한변협이 인권법 공청회를 개최합니다. 오늘 공청회는 이러한 의미에서 매우 중요한 자리가 될 것입니다. 오늘 공청회에서는 인권법 최종안의 주요 문제점을 알 수 있을 뿐 아니라, 국민회의와 한나라당의 입장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많이들 참석하셔서 인권법 논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혜를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 때 : 바로 오늘(월) 오후 2시

● 곳 : 프레스센터 19층(기자회견장)

▣ 주 제 : 인권법안 이대로 좋은가?

▣ 사 회 : 송두환 (대한변협 인권이사)

▣ 주체발표 : 조용환 변호사

▣ 지청토론 : 이기문 의원(국민회의) / 이신범 의원(한나라당 인권부위원장)

양건(한양대 법학과) / 박노현(방송대 교수)

허영춘(추모단체연대회의 의문사지회장) /

이석연(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

인권법 제정 및 국가인권기구 설치 민간단체 공동추진위원회

◆주소: 서울 종로구 명륜2가 8-29 ◆전화:02-741-5363 ◆팩스:741-5364 ◆통신:하/천)rights
◆홈페이지 <http://www.jinbo.net/~freedom/hurights> ◆통신방: 참세상 go hurights

수신 :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님**

제목 : 인권단체 대표단 면담요청서

날짜 : 4월 13일

인권단체 대표들이 드리는 면담요청서

1.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올바른 인권법 제정과 국가인권위원회의 설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31개 민간단체로 구성된 [인권법 제정 및 국가인권기구 설치 민간단체공동추진위원회]라고 합니다.

2. 우리 민간단체들은 정부가 마련한 현 인권법안이 정권 홍보용 장식품에 불과할 뿐 억울한 국민들의 한과 눈물을 씻어줄 수 있는 인권보장기구를 설립할 수 없음을 깊이 통탄하고 있습니다. 하기에 지난 4월 7일부터 오늘까지 일주일동안 명동성당에서 '정부 인권법안 철회 및 재논의'를 추구하고 인권활동가 30여명이 단식농성을 단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부는 지난 8일 민간단체들의 주장을 의도적으로 왜곡·변형한 자료를 배포하기조차 했습니다. 현 정권에 개혁과 인권보장의 기대를 걸어온 우리 민간단체로서는 큰 실망이 아닐 수 없습니다.

3. 현재 정부의 인권법안은 언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지 모르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 민간단체들은 대한변협 주최로 열린 공청회 자리에서 이신범 의원님이 정부안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밝혀주신 것을 듣고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했습니다. 더구나 오늘 이부영 부총재님을 비롯 여러 의원님들이 직접 저희 농성장을 방문해 단식농성단을 격려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이에 우리 민간단체들은 야당인 한나라당이 법무부의 이해관계에 짓눌려 만신창이가 된 인권법안을 바로 잡을 수 있다는 기대를 갖게 되었습니다.

4. 이에 우리 민간단체들은 총재님을 직접 찾아 뵙고 현 사태를 타개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무릎을 맞대고 지혜를 나눌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빠른 시일내에 가능한 시간을 말씀해주시면 최영도 변호사(민변 회장)/ 지은희(여연 대표)/ 광노현(민교협 공동의장)/ 임기란(민가협 의장)/ 김중배(참여연대 대표) 등 대표단 3-4명이 직접 찾아가 뵙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주실 곳 : 배경내 혹은 서준식(T. 741-5363)

인권 자료실		
분류	유기호	2, 3, 4, 5
	C 3-2	61

국가인권위원회는 법무부에 종속되어서는 안됩니다

지난 9월 25일, 법무부는 '국민인권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하는 인권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민간단체들과 법률전문가, 심지어 여당마저도

법무부 안이 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장하지 못하고

유명무실한 법무부 산하기관을 설치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세계 최대의 인권단체인 '국제앰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도 김대중 대통령과

박상천 법무부장관에게 보낸 공개서한을 통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이러한 국내외의 비판에 밀려 법무부는 지난 1일 수정법안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전히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안이라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법무부는 국가인권위원회를 힘없는 '특수법인' 형태로 설립할 것을

줄기차게 고집하고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 설치를 계기로

자신의 위상과 권한을 강화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장치를 마련하고 있는 것입니다.

1. '특수법인'의 주무부처는 법무부!

- '법인'의 경우 주무부처 장관이 설립정관을 작성하는 설립위원들을 위촉하기 때문에 정관 작성은 물론, 기본업무와 사업방향, 활동내용 등에 있어서 처음부터 법무부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2. '법인'은 국가기관을 견제할 수 없다

- 우리 사회의 심각한 인권침해는 대부분 국가기관에 의하여 자행되어왔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법인'에 소속하는 민간인이 권력기구의 인권침해를 조사한다는 것은 애당초 불가능한 일입니다.

3. 법무부 장관이 인권위원을 제청

- 법무부 안에 의하면 법무부 장관이 인권위원 제청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국가인권위원회를 사실상 법무부 통제하에 두려는 의도로 해석될 뿐만 아니라 일개 행정기관의 장에 지나지 않은 법무부 장관의 위상을 비정상적으로 높이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4. 인권위원회의 일거리, 법무부에 빼앗긴다

- 인권위원회가 만들 보고서에 대해서 법무부가 종합·평가·대책 건의를 할 권한을 갖겠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인권위원회가 국회와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연례 보고서도 법무부 장관을 경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그야말로 법무부의 심부름꾼일 뿐입니다.

5. 인권위원회에는 힘이 없다

- 법무부 안에 의하면 인권침해자가 인권위원회의 조사를 거부한다 해도 과태료만 내면 그만입니다. 게다가 국가기관이 인권위원회의 조사를 거부할 수 있는 사유를 광범위하게 규정함으로써 사실상 중요한 인권침해사건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자체가 불가능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인권위원회를 독립된 국가기구로!

-민간단체는 이렇게 생각한다-

<인권법 제정 및 국가인권기구 설치 민간단체공동추진위원회>는 지난 9월 17일에 결성된 민간 인권단체들의 연대기구입니다. 우리는 국가인권위원회를 허수아비로 만들려는 법무부의 의도에 반대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31개 민간단체의 경험과 지혜를 모아 유엔에서 권장하는 기준에도 맞고 국제사회에도 떳떳이 내놓을 수 있는 독자적인 인권위원회 설치법안을 마련했습니다. 민간단체들은 국가인권위원회가 그 누구의 영향도 받지 않는 독립된 국가기구로서 우뚝 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 인권위원회를 독립된 국가기구로 설치해야 합니다.

인권위원회가 법무부를 비롯한 정부기관으로부터 독립하여 자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국가기구로 설치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국가기구로 인권위원회가 설치될 때에만 다른 국가기관을 견제할 수 있습니다.

● 인권위원회의 충분한 조사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 인권위원회가 국가기구에 의한 여러 가지 인권침해 사례를 제대로 조사하고, 피해자들을 구제할 수 있도록, 조사의 한계를 광범위하게 규정한 조항은 삭제되어야 마땅합니다.

법무부는 이기주의와 오만을 버리고 오로지 국민의 인권보장만을 생각하라!

법무부장관의 인권위원 임명제청권을 비롯해 인권위원회의 운영과 제정 전반에 걸쳐 법무부가 간섭할 수 있도록 한 법무부안은 철회되어야 마땅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란?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기관의 횡포에서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한 나라의 인권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유엔이 설치를 권고하는 기관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그 동안 여러 차례 국민에게 국가인권위원회 설치를 약속해왔습니다.

1993년 유엔총회가 채택한 '파리원칙'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과 권한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 ① 인권침해를 조사하고 구제한다
- ② 인권교육이나 인권에 관한 조사연구계획을 지원한다
- ③ 인권관련 법률이나 정책 등 모든 인권문제에 대하여 권고한다
- ④ 자기 나라가 국제인권조약을 비준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촉구한다

유엔은 또한 국가인권위원회가 위와 같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강력한 조사권과 같은 충분한 '권한'을 가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즉 국가인권위원회는 다른 국가기관의 통제를 받지 않을 뿐 아니라 이를 견제할 수 있는 독립적인 기구가 되어야 합니다.

인권 자료		
등록일	분류기호	자료
	C3-1	25

성명서

- 법무부의 국가인권위원회 설립법안 시안에 대하여

1. 법무부가 25일 발표한 인권법 시안은 국가인권위원회에 매우 보잘 것 없는 권한만을 부여해, 국가인권위원회의 구실을 유명무실하게 했다. 법무부의 인권법 시안은 국가인권위원회를 특수법인으로 하고 수사기관의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 제한적으로 권고하도록 하고 있다.

인권침해와 관련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관할 사항을 수사 공무원 및 수용시설 종사자의 가혹행위 등 7가지에 국한해, 이를 제외한 모든 종류의 인권침해 사항을 다룰 수 없게 했다. 또한 법무부 시안은 국가인권위원회가 기소권을 갖지 못한 채 수사기관의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에 대한 의견을 다른 국가기관에 권고만 할 수 있게 함으로써 기구의 권한을 크게 제한하였다. 그러나 국가인권기구는 유엔이 권고하듯이, 헌법 또는 법률에 그 구성과 범위가 명시돼 있는 가능한 한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 받아야 한다. 우리는 그러한 원칙을 전적으로 지지한다.

2. 국가인권기구의 제1의 원칙은 정부로부터의 독립성이 유지돼야 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법무부가 발표한 인권법 시안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이사를 법무부장관이 제청하고,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지결과를 법무부장관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는 등 곳곳에 법무부가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장치를 두고 있다. 우려한 대로 국가인권위원회를 법무부에 종속시켜 국가기관에 의한 인권침해 사건을 제대로 다룰 수 없게 하려는 의도이다. 일개 법인인 인권위원회 조사관이 경찰, 검찰, 안기부 등 수사기관을 조사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3. 우리는 법무부가 발표한 인권법 시안은 단지 시안일 뿐이라고 믿는다. 우리는 전국의 30개 민간단체의 협의체인 <인권법 제정 및 국가인권기구 설치 민간단체공동추진위원회>가 일관되게 주장하듯이, 인권법 제정과 국가인권기구 설립에 민간단체를 포함한 국민의 의견이 민주적 절차를 거쳐 수렴돼야 한다고 믿는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단체가 참여하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1998년 9월 26일

전북평화와인권연대 공동대표 문규현(文奎鉉) · 김승환(金承煥)

성 명 서

- 인권법 제정과 국가인권기구 설치에 대하여 -

박상천 법무장관은 오늘(1998. 9. 25) 기자회견을 통하여 그 동안 정부에서 준비하여 온 인권법 제정과 국민인권위원회 설치 구상에 대하여 밝혔다. 그 내용의 주요 골자는 차별행위와 수사기관의 인권침해행위만을 관할대상으로 하고, 국민인권위원회를 독립된 특수법인으로 하며, 동 법인의 운영을 담당할 이사들을 법무부장관이 제청하여 대통령이 임명하고, 국민인권위원회는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구제조치 등을 타 국가기관에 권고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 등이다.

우리는 현정부의 인권법 제정과 국가인권기구의 설치가 국내 인권상황을 획기적으로 개선시켜 국제사회의 기준에 부합하는 인권선진국으로 도약하는 길이라 생각하고 정부의 방침에 지지의사를 밝힌 바 있다. 아울러 국가인권기구가 제대로 기능하려면 사회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전국민적 합의로 인권위원회의 위상과 권한이 정해져야 한다고 주장하여 왔다. 우리는 정부가 인권법을 제정하고 국가인권기구를 설치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환영하지만, 오늘 박상천 장관이 밝힌 구상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무엇보다도 오늘 박상천 장관이 밝힌 국민인권위원회는 이를 독립된 특수법인으로 구상하고 있고, 더구나 그 법인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를 구성하는 이사들은 모두 법무부 장관이 제청하여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구상하고 있다. 우리 실정상 특수법인은 정부 부처의 관리, 감독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더구나 그 최고운영기구의 담당자들을 모두 법무부 장관이 제청하여 임명한다는 것은 국민인권위원회가 법무부의 감독을 받는 여러 기관이나 법인 중의 하나에 불과함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국민인권위원회가 이와 같이 구성되는 한 국가인권기구 설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독립성을 보장할 수 없음은 더 말 할 것도 없다. 국가인권기구가 국제인권법 시대의 현대 민주인권국가에 요구되는 새로운 국가기구로서 현대적 민주헌정질서의 불가결한 일부를 이루는 것이라면, 그 위상은 준헌법적 기구의 위상을 가질 수 있도록 설정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그러므로 이 번 법무부의 구상은 마땅히 수정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둘째, 법무부는 국민인권위원회 결정의 효력에 관해서도 국민고충처리위원회와 마찬가지로 권고적 효력만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이 권고적 효력만을 인정할 경우 안기부와 검찰, 경찰 등 권력기관의 경우에는 그 권고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음을 능히 짐작할 수 있다. 그렇게 된다면 국민인권위원회는 유명무실한 기관으로 전락할 것이고, 이에

따라 국가인권기구를 설치하는 의미도 현저히 퇴색되고 말 것이다. 국민인권위원회의 처리결과에 구속력을 인정함으로써 그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셋째, 법무부는 국민인권위원회의 업무영역을 차별행위와 수사기관에 의한 인권침해행위로 한정하고 있다. 수사기관의 인권침해행위가 국민의 인권보장에 있어서 아직도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은 이를 인정할 수 있지만, 오늘날 국제사회에서 널리 인정되고 있는 광범위한 인권의 내용을 이렇게 협소하게 상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우리는 오늘 법무부가 이와 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법안을 마련하게 된 것은 요컨대 인권법의 제정과 국가인권기구의 설립의 중요성을 무시하고 광범위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결과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법무부는 이번 법안을 마련하면서 민간인권단체나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음은 물론 심지어는 정부부처간 혹은 당정협의조차도 거치지 않았다고 한다. 결국 이번 법무부 안은 그야말로 법무부 독자의 안이다. 유신과 군사독재정권의 인권탄압에 맞서 인권옹호투쟁을 전개해 온 우리 인권 관련 민간단체들은 그 과정에서 우리사회의 인권보장과 증진을 위한 실천적 과제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부는 단 한 번도 이러한 민간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어떠한 절차도 거치지 않고 관주도의 안을 성안한 것이다. 국가인권기구는 민간단체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해야 효율적인 활동을 할 수 있다. 국가인권기구를 국민에 알리고, 인권정보를 제공하며, 국가인권기구와 국민을 연결하는 통로가 되는 것이 바로 민간인권단체들이다. 정부의 이러한 일방통행식 법안 마련은 민간단체의 협력을 얻기 힘들고, 향후 국민인권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는데 있어서도 장애요소가 될 것이다.

우리는 오늘 법무부 장관이 국민인권위원회 설치에 대한 법무부안을 발표한 것이 각계 의견을 수렴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국가인권기구의 설치는 그 중요성에 비추어 결코 법무부 주도의 일방통행식 결정으로 이루어질 성질의 것이 아니다. 세계인권선언 50주년 기념일에 맞추어 국민적 축제분위기 속에서 인권법 제정을 성사시키는 것이 긴급하다면 법무부는 겸허한 자세로 국민들의 염원을 담아낼 수 있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1998년 9월 25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최영도

인권 자료실		
등록일	유무기호	사료번호
	C 3-2	50

인권법 제정 및 국가인권기구 설치 민간단체 공동추진위원회

[110-522] 서울시 종로구 명륜동 2가 8-29, 4층.

전화 741-5363 / 팩스 741-5364 / 통산 rights(하이텔·천리안) / 홈페이지 <http://www.jirto.net/freedom/hrights> / 통신방 참세상 go hrights

긴급성명

올바른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을 위하여 법무부는 오만과 욕심을 버려야 한다

1. 지난 28일 법무부와 여당은 국가인권위원회 설치문제와 관련하여 당정협의를 하였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의 형태 등 핵심 쟁점사항에 대한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조율에 실패하였다 한다. 우리는 끝내 '특수법인' 형태를 고집함으로써 국가인권위원회를 자신의 통제하에 두려는 법무부의 오만과 욕심에 아연하지 않을 수가 없다.

국가인권위원회 설립을 위한 노력은 우리의 암울했던 지난 날들에 대한 철저한 반성에서 출발해야 한다. 우리는 50년만에 탄생한 새 정권 아래 인권보장의 기구로서 환골탈퇴 하겠다던 법무부가 이러한 반성을 외면한 채 최근 다시금 인권보장을 위한 새로운 도약을 가로막고 나선 데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이에 엄중 항의하고자 한다.

2. 김대중 대통령의 주요한 대선공약이었던 국가인권위원회 설치 논의가 구체화되기 시작한 지난 여름 이후 수많은 공청회와 토론회가 있었다. 그런 과정을 거쳐 우리가 확인하고 또 확인했던 사실은 국가인권위원회 설치를 염원하는 많은 사람들 사이에는 하나의 확고한 인식이 있으며, 그 인식이 갈수록 확고해지고 넓어져 왔다는 사실이다. 그 것은 바로 국가인권위원회는 그 어떠한 정부기관에도 종속되거나 영향을 받음이 없는 독립된 기구로서 서야 한다는 인식이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 취지를 생각할 때 너무나도 당연한 결론이라고 할 이런 인식은 그 동안 여야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를 막론하고 계속 확산되어왔다.

3. 그 동안 우리가 누누히 주장해온 점은 국가인권위원회가 법인이 될 경우 결국 법인에 대한 감독관청으로서 법무부가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었으며, 이것은 바로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 아닐 수 없다는 것이었다. 과거에 무고한 국민들의 인권을 유린해온 가장 대표적인 국가기관이 다름아닌 법무부였다는 분명한 사실을 생각할 때 법무부의 시안은 참으로 뻔뻔스럽고도 소름끼치는 발상이라고 할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런 까닭에 여타 국가기관, 특히 법무부로부터 독립되고 대등한 관계에서 이를

감시·견제할 수 있는 국가기구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4. 이렇듯 대세는 국가인권위원회가 독립적 국가기구로서 설치되기를 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부가 끝끝내 '법인' 안을 고집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는 법무부의 이성을 잃은 이 고집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우리는 유감스럽게도 법무부 내 기득권 세력이 국가인권위원회 설립이라는 이 역사적 계기를 빙자하여 법무부의 위상을 강화시켜보자는 음모를 꾸미고 있다고 판단하지 않을 수 없다. 다시 말해서 인권위원회는 설치하되 그것을 법무부 통제 하에 두어 사실상의 허수아비로 만듦으로써 법무부가 '인권'의 이름으로 정부의 모든 분야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해보려는 야망을 품고 있다고밖에 달리 해석할 수가 없는 것이다. 법무부 시안은 이런 의도를 곳곳에서 결코 숨기지 않는다. 하나의 예를 들어 법무부 시안에 따르면 국가인권위원회는 과거에 수많은 국민들을 올려왔던 관리의 반인권적 횡포와 중횡 그리고 관행 등을 대통령과 국회에 직접 알리는 통로를 갖지 못하며 이런 통로는 모조리 법무부 장관에 의하여 차단되도록 만들어져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런 시안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5. 끝내 '법인'을 고집하는 법무부의 태도 속에 우리는 법무부가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영향력을 포기할 바에는 판을 깨겠다는 의도가 숨어 있음을 감지한다. 우리는 이런 법무부의 고집을 김대중 대통령의 인권의지에 대한 반항이요 50년만의 평화적 정권교체를 이룬 국민의 여망에 대한 배신이라고 규정한다.

50년 동안 억눌려온 국민의 여망을 실현시키기 위하여, 그리고 국제사회에 부끄럽지 않은 국가인권위원회를 창설하기 위하여 법무부는 오만과 욕심을 버려야 한다. 법무부의 오만과 욕심이 만약에 끝내 올바른 국가인권위원회 설치를 좌절시키는 일이 있다면 인권법 제정 및 국가인권기구 설치 민간단체 공동추진위원회를 함께 구성하는 우리 31개 시민·사회단체는 기왕에 결의한 바에 따라 즉각 실행사의 길로 나설 것이다. 또한 앞으로 독립성이 훼손된 채 설치되는 그 어떠한 국가인권위원회도 인권을 위하여 헌신하는 모든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철저히 외면당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두는 바이다.

1998년 11월 30일

인권법 제정 및 국가인권기구 설치 민간단체 공동추진위원회

(공동추진위원회 구성 민간단체는 다음 쪽에 있음)

'인권법 제정 및 국가인권기구 설치 민간단체 공동추진위원회' 소속 31개 민간단체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유현석]
- 법률소비자연맹 [총재 김대인]
- 광주 인권지기 [회장 김동균]
-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 [회장 허창수]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회장 박병섭]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최영도]
-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의장 직무대행 노수희]
-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공동의장 곽노현]
-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상임의장 김정숙]
- 불교인권위원회 [대표 진판]
-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대표 박천웅]
- 인권운동사랑방 [대표 서준식]
- 장애우권의문제연구소 [이사장 김성재]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김귀식]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이갑용]
- 전국민주주의민족통일유가족협의회 [회장 배은심]
- 전북평화와 인권연대 [대표 문규현]
- 주한미군범죄근절을 위한 운동본부 [상임공동대표 전우섭]
-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공동대표 김종배, 박상중]
- 천주교인권위원회 [위원장 김형태]
-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공동대표 박승원]
- 한국교회여성연합회 [회장 이정옥]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 [위원장 이명남]
- 한국기독교사회선교협의회 [공동대표 오충일]
- 한국동성애자단체협의회 [대변인 박두성]
-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최영애]
- 한국여성단체연합 [대표 지은희]
- 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 이경숙, 정강자]
- 한국 여성의 진화연합 [회장 신혜수]
- 성공회대학 인권평화연구소 [소장 이재정]
- 한국장애인연맹(DPI) [회장 송영욱]

인권 자료		
등록일	구분기호	자료번호
	C 3-2	56

대통령께 보내는 건의문

우리는 올바른 국가인권기구가 설치되기를 원합니다

1.

사람은 그 존귀함을 잃어버리는 시대에 진정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과거의 길고 험한 세월을 살아오는 과정에서 우리 모두가 이런 진리를 뼈저리게 실감했을 것입니다. 불행했던 우리의 지난 역사 속에서 사람들은 마치 무슨 짐승이나 물건처럼 취급당해 왔으며 많은 사람들이 상하고 고통을 받았습니다. 암흑의 시대와의 결별은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었고 우리는 이를 위하여 고난의 세월 속에서 열심히 기도하며 투쟁했습니다.

50년만에 평화적 정권교체가 이루어지던 날, 김대중 대통령께서 상기된 표정으로 "인권이 존중되는 사회"를 말씀하셨습니다. 큰 희망의 울림으로 다가온 이 말씀에 우리는 비인간적인 시대와의 완전한 결별을 예감할 수가 있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새 대통령과 새 정부에 기대했던 바를 우리는 단 한마디로 축약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권의 실현'입니다.

2.

지난 여름,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미국 땅에서 전세계를 향하여 우리의 인권신장을 위한 놀라운 약속을 내놓으셨습니다. 인권법 제정과 국가인권위원회 설치라는 약속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이 약속이야말로 오랫동안 고통 당하고 상처 입은 국민들이 갈망해 마지않던 빛 그 자체라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제도에 결박되면서, 인간 경시의 고질적인 관행에서 우리의 관리들은 오랫동안 헤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국민은 거대한 권력으로부터 보잘것없는 권력에 이르기까지, 모든 수준의 권력이 일상적으로 부리는 횡포에 만성적으로 시달려온 것입니다. 이런 국민에게, 그 어떤 권력에도 복속되지 않고 높은 권위와 강한 권한을 가지고 공정하게 인권수호에만 전념하는 국가인권위원회가 탄생한다는 사실은 곧 낡은 시대에서 새 시대로의 도약을 의미하는 획기적인 사건에 다름이 아닐 것입니다.

3.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지금 우리는 김대중 대통령의 인권구현 의지를 세계만방에 선포한 이 획기적인 약속이 반년이 거의 다 되도록 시원스럽게 이행단계로 넘어가지 못하고 있음을 목격하게 됩니다. 참으로 우울 하고도 착잡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루한 논쟁 속에 그 설립으로 성큼 다가서지 못하고 있는 이유를 생각해보건대 우리는 이 논의가 근본적으로 "인권이 존중되는 사회"라는 대의를 저버리는 가운데 제자리를 맴돌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설립을 위한 준비는 이러저러한 이해관계를 멀리 넘어선 '인권 존중'의 대의에 굳건히 서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암울했던 지난날들에 대한 철저한 반성에서 출발하여야 할 것입니다.

4.

지금 지구촌 곳곳에서는 온갖 피부색 사람들이 기쁜 마음으로 세계인권선언 50주년을 축하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우리 나라에서 모든 억울한 국민의 희망이 되어 그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국가인권위원회가 탄생하게 됨을 우리는 영광으로 생각함과 동시에 감사해 하지 않습니다.

부디 대통령께서 국민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헤아려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주의 깊게 살펴주시고 훌륭한 국가인권위원회 설립에 노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기대하며 그리고 주목하겠습니다.

그 어떠한 권력의 눈치도 보지 않는 공정 무사한 국가인권위원회,
현실로 국민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국가인권위원회,
국제사회에 자랑스럽게 내놓을 수 있는 국가인권위원회,
그리고 민주화애의 이행기에 있는 아시아 여러 나라의 모범이 되는 국가인권위원회...

이런 국가인권위원회를 만드는데 혼신의 힘을 써주십시오. 그리하여 오래오래 국민이 기억하는 '인권대통령'으로서 남아주시기 바랍니다.

1998년 12월 8일

강만길	고 은	김관석	김성수
김찬국	박형규	서영훈	유현석
이돈명	이세중	한완상	

독립된 국가인권위원회 설치를 열망하는 인권단체들의 건의문

1999년 2월 19일

독립된 국가인권위원회 설치를 염원하는 인권단체들

국제앰네스티한국지부/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민족통
일전국연합/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법률소비자연맹/ 불
교인권위원회/ 성공회대인권평화연구소/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지
기(광주)/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
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주한미군범죄근절을위
한운동본부/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한국교
회여성연합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인권위원회/ 한국기독교사회선교협의회/ 한국동성애
자단체협의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연합
/ 한국장애인연맹(DPI)

김대중 대통령께

저희는 인권·여성·종교·장애·학술 등 다양한 인권분야에서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민간 인권단체들입니다. 저희 인권단체들은 대통령께서 대선공약과 새정부 100대 과제로서 독립된 인권위원회 설치를 약속하셨을 때, 드디어 우리나라도 인권후진국이라는 오랜 오명을 벗고 인권이 보장되는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로 거듭날 수 있다는 희망과 기대에 들떴습니다. 대통령님의 인권의지에 대한 국제사회의 기대도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국가인권위원회 논의가 대통령께서 취임하신 지 1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까지도 매듭지어질 조짐이 보이지 않고, 혼미상태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권단체들은 지난해 9월 법무부가 내놓은 인권법안을 접하고서 크게 실망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에 우리는 국제사회와 국민 앞에 떳떳이 내놓을 수 있는 최소한의 국가인권위원회 설치를 염원하면서 법무부안의 문제점을 성실하게 지적해 왔으며, 이러한 저희들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될 것이라는 믿음을 최근까지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니 지난 6개월 동안 법무부가 보여준 태도는 저희 인권단체들에게 배신감과 분노마저 안겨주기에 충분한 것이었습니다.

법무부는 우리 인권단체들의 지적을 무시하면서 자기 주장만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각 방면에 맹렬한 로비를 전개해 왔으며, 국가인권위원회 설치를 기화로 법무부의 위상을 높이려는 터무니없는 야심만을 드러내 왔습니다. 당정간에 열린 수차례의 협의는 언제나 진전없는 담보상태를 거듭해 왔으며, 우리는 지난 9일 인권위원회 설치문제를 사실상 매듭짓기 위해 열린 당정협의마저 또 다시 결렬되었다는 절망적인 소식을 접해야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대통령과 온 국민의 여망인 국가인권위원회 설치가 이렇듯 지연되고 있는 것은 법무부의 야심과 아집 때문임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의 개입과 간섭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합니다

우리는 지난해 11월, “유엔이 제시한 기준에 따라 인권위원회를 설치하라”고 하신 대통령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기구 설치문제에 있어 유엔이 그 무엇보다도 강조하는 것은 바로 국가인권기구의 독립적인 권한과 위상입니다. 그러나 법무부안은 유엔이 제시한 기준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입니다. 법무부안을 살펴보면, 법무부가 다양한 경로를 통해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예산, 정책 등 제반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을 교묘히 훼손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국가인권위원회가 법인의 형태로 설립되는 한 주무부처인 법무부의 개입과 간섭은 피할 수 없는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법무부가 우리와는 법체계와 제도가 근본적으로 다른 외국의 입법례를 아전인수격으로 끌어대면서까지 끝까지 특수법인안을 고집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법무부는 국가인권위원회를 특수법인으로 설립함으로써 인권업무에 관한 보충적인 역할만 수행하도록 하는 한편, 자신은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감독권을 장악함으로써 ‘인권’을 통하여 자신의 위상을 최대한 드높이려는 허황된 꿈을 꾸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권단체들과 인권전문가, 국제앰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와 같은 국제인권단체마저

도 위와 같이 법무부안이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장하기에는 치명적 결함을 안고 있음을 누누이 지적해 왔습니다.

법무부가 국가인권위원회 설치를 주도해서는 안됩니다

유엔인권고등판무관 매리 로빈슨 씨는 “인권기구를 설치함에 있어 기구의 위상과 권한도 중요하지만 민간단체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민주적인 절차에도 똑같은 중요성이 부여되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우리는 대통령께서 “민간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당에서 법안을 만들라”고 지시하셨던 것을 이와 같은 맥락에서 하신 말씀으로 이해하고자 합니다. 그럼에도 법무부는 지난 해 9월 법안을 발표한 후 단 한 차례의 공청회만 개최했을 뿐 민간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보장하려는 자세를 거의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해 9월부터 법무부가 입법과정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을 해 왔습니다. 무엇보다도 검찰과 교정시설의 지휘감독기관으로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주요한 감시대상이 되어야 할 법무부가 오히려 인권위원회 설치를 주도하는 기묘한 전도현상을 우리는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이런 국가인권위원회를 원합니다

우리 인권단체들은 앞으로 설치될 국가인권위원회가 최소한 다음의 요건을 충족시켜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인권위원회는 반드시 독립된 국가기구로 설치되어야만 합니다.

유엔을 비롯한 국제인권단체들은 각 나라 실정에 비추어 가장 독립적일 수 있는 위상을 인권기구에 부여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인권위원회가 법무부를 비롯한 정부기관으로부터 독립하여 자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가기구로 설치되어야 합니다. 국가기구로 설치될 때에만 다른 국가기관, 특히 잦은 인권침해 시비를 일으키고 있는 검찰이나 안기부 등 여러 국가기관의 인권무시를 견제함으로써 인권침해를 예방해 나갈 수 있습니다.

둘째, 법무부의 개입과 간섭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합니다.

법무부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상을 ‘법무부의 보충기구’ 정도로만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해석에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과 위상을 부당하게 왜소화시키려는 의도가 드러나 있습니다. 이러한 부당한 해석은 인권위원회를 특수법인으로 설립함으로써 주무부처인 자신이 인권위원회의 구성과 예산, 운영 전반에 걸쳐 개입하고 간섭하기 위한 것입니다. 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법무부의 개입과 간섭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합니다. 따라서 법무부장관의 인권위원 추천권, 설립위원 추천권, 인권위원회의 보고서를 법무부장관을 경유해 제출하도록 한 조항, 인권위원회의 예산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의견 제출권 등에 대해 저희는 단호히 반대합니다. 인권위원은 국회의 동의를 구해 대통령이 직접 임명해야 하며, 인권위원회가 자율적으로 규칙을 정하고 국회와 대통령께 직접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인권위원회 예산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인권위원회가 자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예산의 독립성이 필수적입니다. 인권위원회

가 법인으로 설립되어 정부의 출연금을 받을 경우, 법무부장관의 예산을 통한 통제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인권위원회의 위원장을 예산회계법 제14조에 정한 “중앙관서의 장”으로 간주하여 예산의 편성과 집행, 결산 등에 대한 독립성을 보장해야 하며, 예산편성부처에서 인권위원회의 예산을 삭감하고자 할 때에는 인권위원회 위원장의 의견을 구하도록 해야 합니다.

넷째, 인권위원회의 관할범위를 넓혀야 합니다.

법무부는 인권위원회의 조사대상이 되는 인권침해행위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무부의 업무분장 범위에만 익숙해져 있는 법무관료의 협소한 상식을 표현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인권위원회의 관할범위를 이렇게 제한하는 것은 다른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입법례일 뿐만 아니라,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적 자유와 권리에 대한 침해행위에 대해서도 관할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인권’의 개념은 원래 왜소한 법무관료의 상식보다 훨씬 더 포괄적입니다.

다섯째, 인권위원회의 충분한 조사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인권위원회가 인권침해에 대해 제대로 조사할 수 있으려면, △자료제출 요구권 △관련자 출석 요구권 △증인 신문권 △교정 및 구금시설, 수용시설, 다수인보호시설 등에 대한 현지조사권 △재소자 또는 시설수용자와의 비밀 접견권 등 충분한 조사권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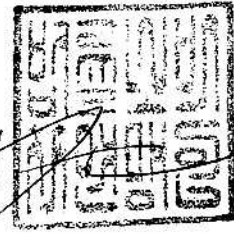
여섯째, 인권위원회가 내린 결정의 실효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인권침해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구제하고 이와 더불어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인권위원회가 충분한 구제권한을 확보해야 합니다. 인권위원회가 시정권고를 내려도 국가기관등 인권을 침해한 개인이나 기관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인권위원회에 대한 신뢰가 크게 훼손될 수밖에 없게 되고, 결국 국민으로부터 외면받는 인권위원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인권위원회가 인권침해행위의 중지나 손해배상 등 직접적인 구제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신속·간이한 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법률이나 제도, 정책 등에 대해서는 개선을 권고함으로써 앞으로 더 이상의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예방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반개혁세력에 굴복하지 마십시오

‘개혁’이 여기저기서 무너지고 있습니다. 대통령께 걸었던 인권단체들의 기대도 이번 국가인권위원회 설치 논의 과정에서 서서히 무너져가고 있는 듯합니다. 국제사회가 한국의 대통령의 인권의 지에 주목하고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더 이상 법무관료들에게 휘둘리지 마십시오. 우리는 지금 이 시점에서 야당과 연대하여 법무부안 저지투쟁을 전개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만약 반개혁세력의 집단이기주의와 오만에 굴복하시게 된다면 우리는 미련없이 ‘우리의 대통령’으로부터 떠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식으로 설치될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하여 우리는 일치단결하여 어떠한 협조도 거부할 것입니다.

법률소비자연맹 총재 김대인 (인)



국제앰네스티한국지부 회장 허창수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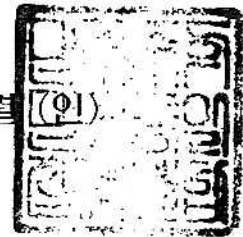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회장 박병섭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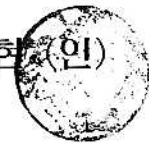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최영도 (인)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상임의장 오종렬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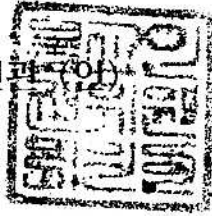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공동의장 곽노현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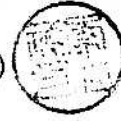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상임의장 김정숙 (인)



불교인권위원회 대표 진관(인)



성공회대인권평화연구소 소장 이재정 (인)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대표 박찬홍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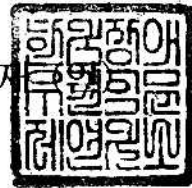
인권운동사랑방 대표 서준식 (인)



인권지기(광주) 회장 이동균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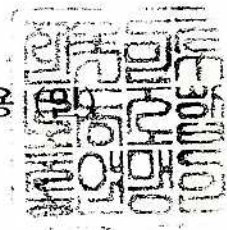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이사장 김성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김귀순 (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이갑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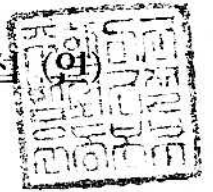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회장 배은심



전북평화와 인권연대 공동대표 문규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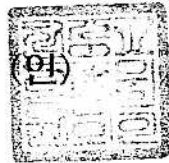
주한미군범죄근절을 위한 운동본부 상임공동대표 전우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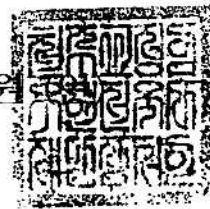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공동대표 김종배, 박상증



천주교인권위원회 위원장 김형태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공동대표 박승원



한국교회여성연합회 회장 이정옥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 위원장 이재정

